

2025. 9.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 제 시 의 회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최승선 의원)

의안 번호	2025-118
----------	----------

발의연월일 : 2025. 9.

발 의 자 : 최승선, 오승경,
문순자, 전수관 의원 (4명)

1. 제정이유

- 아열대 기후 확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후에 적합한 농작물 품종 육성을 지원하여 김제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시장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6조)
- 마.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사.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규제심사 대상 여부 : 부
-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 : 부
- 라. 비용추계서 대상 여부 : 여
- 마.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조회) : 여
-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4. 붙임자료

- 가. 조례제정안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관련 법령 발췌서
- 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현황
- 마. 타 시·도 조례
- 바. 입법예고 결과
- 사. 부서의견 조회 결과
- 아. 부서 참고 자료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기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적지 이동으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신소득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가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6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육성계획이 포함된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의 기술 개발 및 보급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 및 유통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그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 조사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작물 개발 및 종묘 보급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실증 및 재배 시설 보급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5.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업인 등의 민간 네트워크 협력 지원
6. 그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자문 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자문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육성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지원사업의 심의
3. 그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자문 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배 관련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소비촉진)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홍보 및

소비촉진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안 관련내용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작물 개발 및 종묘 보급
2.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실증 및 재배 시설 보급
3.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
4.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5.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업인 등의 민간 네트워크 협력 지원
6. 그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라 비용발생에 해당하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의 내용은 현재 시점에서 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함.

4. 작성자 : 농업정책팀장 박순희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 관련 법령 발췌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⑥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 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농촌진흥법」

제30조(농업 산·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학계·관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동사업(이하 “농업 산·학협동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농업 산·학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관련 학교, 농업단체, 연구기관, 기업, 농업인에게 농업 산·학협동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조례 현황

구분	조례		조례명	제정일
	여	부		
전라북도		○		
전주시		○		
군산시		○		
익산시		○		
정읍시		○		
남원시		○		
완주군	○		「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12.22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		「장수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4.12.26
임실군		○		
순창군		○		
고창군		○		
부안군		○		

□ 타 시 · 도 조례 현황

구분	조례명	제정일
원주시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25.03.2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5.03.07
남해군	「남해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4.12.10
김해시	「김해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4.12.19
여수시	「여수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4.12.06
안성시	「안성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4.11.22
태안군	「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먹거리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4.09.26
영주시	「영주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4.09.19
거제시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4.06.07
보성군	「보성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4.03.22
부여군	「부여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02.24
통영시	「통영시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21.11.15
경상남도	「경상남도 기후변화 신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21.07.08

□ 타 시·군 조례

장수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4.12.16 조례 제279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신소득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같은 법 제3조제4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5.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실증재배 및 시범사업

6.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소비촉진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장수군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94호, 2024.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4.12.19 조례 제213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인들의 작물 전환 및 재배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농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기후변화를 말한다.
2. “기후변화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환경에 적응하는 아열대 작물 또는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적지(適地) 이동으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김해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수립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육성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육성계획에는 기후변화대응 작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 방향
2. 시책 및 세부 추진 전략
3. 조사·관리·재배 등의 현황
4. 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촉진 방안
5. 생산·가공·유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대상작물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의 지원)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 및 연구
2.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3. 품종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4. 종자, 종구, 묘목 등 구매 지원
5.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
6. 교육, 전문컨설팅 및 전문 인력 양성
7. 판로개척, 소비촉진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
8.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자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원활한 재배·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2. 육성사업의 지원
3. 유관기관, 농업인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김해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 관련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2138호 202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새기술 및 새작목 현장 지도 결과 (아열대채소)

□ 실증 농가 현황

- 실증농가 : 이진수
- 실증장소 :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 790, 791
- 실증작목 : 아열대채소 4종(공심채, 고수, 카피르라임, 레몬글라스)
- 면 적 : 1,000m²
- 재배 방식 : 노지형 양액재배 ----- 추후 시설 양액 예정
- 실증기간 : 2025. 3월 ~ 12월
- 실증 내용 : 아열대 채소 지역 적응성 실증, 유통 판매 가능성 실증

□ 작목별 재배 현황

구분	재배방법	파종 및 정식 시기	파종 및 정식 간격	EC 및 PH	양액 조성	수확시기	재배 특성
공심채	○ 노지형양액재배 ※ 추후 시설형 양액재배 (시설 보수중)	○ 4월 초 ※1년 주기 파종	○ 파종깊이 : 씨앗의 2배 ○ 간 격 : 사방 15cm	○ EC : 1.2 ○ PH : 7	○ A액 : Fe ○ B액 : N,P,K, 미량요소 ○ C액 : Ca ※침전물 예방양액통 A,B,C로 분리	○ 파종 후 40~45일 첫 수확 ○ 첫 수확 후 15일 간격으로 앞줄기 수확 (2026.3월까지)	○ 수분 요구도 높음. ○ 부족 시 경화, 수량 감소
고수	“	○ 첫 파종 : 4월 초 ○ 파종 주기 : 60일	○ 파종 깊이 : 씨앗의 2배 ○ 간격 : 사방 15cm	○ E: 1.2 ○ PH: 7	○ A액 : Fe ○ B액 : N,P,K, 미량요소 ○ C액 : Ca	○ 파종 후 60일 후 뿌리채 수확	고온기 차광시설로 추대 발생 예방
카피르라임	○ 화분 재배 ○ 관행 비료 ※추후 시설 재배	○ 5월 중순 정식 (2년생, 화분)		○ 관련없음	○ 비료 시비	○ 잎색이 짙고 향 발현 시 수시 잎 수확	월동관리 : 5~8°C 유지
레몬글라스	○ 노지 ○ 관행 비료 ※추후 시설 재배	○ 4월 종구 파종 ○ 5월 20일 이후 정식	정식 ○ 모 간격 : 30~40cm ○ 줄 간격 : 40~50cm	○ 관련없음	○ 비료 시비	○ 150~180일 (10월 이후) 뿌리채 수확	월동 관리 : ○ 최저 10이하 생육 정지 ○ 0°C 고사

□ 아열대과수 재배 현황

○ 아열대 과수 재배현황

- 기후현황 : 기후변화로 인해 전북지역 시설재배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이상고온으로 겨울철 평균기온 1~2℃ 높아 시설 난방비 절감
 - ⇒ 난방비 40% 감소 : 660천원/10a ('23년: 1,100천원/10a)
- 농가현황 : 전업농보다 부업농 비율이 60% 이상으로 높음
- 재배면적 : 10ha, 45농가

작목	면적(ha)	농가수	비고
계	10.0	45	
참다래	2.4	10	
만감류	3.2	16	
체 리	1.7	6	
구와바	0.7	3	
바나나	0.3	4	
망 고	0.7	3	
백향과	0.7	2	
바닐라	0.3	1	

○ 아열대 과수 쟁점사항

- 아열대 과수(만감류 기준) 조수익 매우 낮음

구분(10a 기준)	농가수익	경영비	조수익
제주도	16백만원	9백만원	7백만원
전남.전북	12백만원	13백만원	-1백만원
비교	25% 감소	31% 증가	

- 체험교육, 가공식품 판매 등 2차~4차 산업 연계시 추가 수익 가능

- 재배 난이도가 높아 신규 농가의 경우 선 교육 후 진입 필요
- 일반 노지 과수에 비해 시설 과수는 온·습도 관리, 토양 및 병해충, 수세관리 등 추가적인 재배기술이 필요함

○ 아열대 과수 유망품종

- (애플망고) 올해 출하가격 10만원/3kg(1박스)으로 정상적으로 수확한다면 조수익 10백만원/10a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애플망고 농가(현재 3농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지속적인 현장기술 지도를 통해서 수확량을 증대할 계획임

□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김 제 시 의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최승선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 례 안 명 :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5. 8. 18. - 2025. 8. 25.(5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김제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끝.

지원관

장리윤

정책지원팀장

김선미

의회사무국장

전일 2025. 8. 26.

이영석

참조자

시행 의회사무국-4490

참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076

팩스번호 063-540-2777

/ nekimi321@korea.com

/ 대국민 공개

금빛 희망! 꿈을 수확하는 김제

□ 부서 의견 조회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김 제 시 의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서 의견조회 결과보고

최승선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부서의견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 례 안 명 : 김제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의견조회 기간 : 2025. 8. 18. - 2025. 8. 25.(5일간)
3. 의견조회 방법 : 의회사무국-4319호(2025. 8. 18.)로 공문 협의
4. 의견조회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끝.

지원관

장라윤

정책지원팀장

김선미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전달 2025. 8. 26.

협조자

시행 의회사무국-4489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075

팩스번호 063-540-2777

/ nekimi321@korea.com

/ 대국민 공개

금빛 희망 꿈을 수확하는 김제